

The Strategic Approach to FTA Governmental Negotiation Method between China

중국과의 FTA 협상방식을 위한 전략적 접근

Na, Seung-Hwa(나승화)*

Abstract

Since Korea establish diplomatic ties with China in 1992, Korea and China have had rapid progress in most of field as politic, economy, society and culture through basing on cultural commonality and geographical adjacency. Especially, China is the biggest trading partner to Korea, and also Korea is third-biggest trading country to China. They become strategic cooperating relation in 2008.

Currently, in terms of international trade relation, WTO/DDA negotiation is proceeding in difficulty, but FTA has been growing and extending in the world, and the two country, China and Korea, have been competitively trying wide and active FTA negotiation promotion.

After Financial crisis in 1997, according to the requirement of local economic cooperation, China has shown the interest to several countries since the conclusion of FTA treaty with ASEAN in 2005. China also makes the active effort to conclude FTA with Korea. Last May 28th, this was mentioned in the meeting between President Lee and Premier Wen Jiabao, so it is anticipated that the negotiation for FTA will be started in the near future.

There are many political suggestions and concerns in terms of way of negotiation Korea would choose. Some economist said that "Continuous FTA aimed at long-term protocol should be promoted between Korea and China and negotiated inclusively" However, this research claims that commodity exchange, service, and investment areas should be included and it has to be comprehensive package settlement style in negotiation.

This research has found out the characteristics of China's negotiation and implications through the China's existed FTA negotiation examples. Currently, China has taken Continuous or a phase-negotiation method to ASEAN, Pakistan, Chile and some other developing country and to advanced countries like New Zealand or Singapore, comprehensive package settlement method is used in FTA negotiation.

In consider of the FTA negotiation between Korea and China, Korea has some problems in the commodity change area in agriculture market's opening. While, for China, the issues would happen in service trade area, especially when encountering finance and communication industries are opened, China's economy could be exposed to some risk. In result, Korea should expand its negotiation

range from commodity trade to service trade, in order to exchange both issues, then the negotiation will be concluded more easily.

In other word, for FTA, Korea should follow comprehensive package settlement way that is similar to New Zealand and Singapore case. Through this kind of method, Korea can expect effect of creating trade, conversion of it and preoccupation of service field in China's market against the advanced countries like USA, Europe and Japan.

Also, to have a successful FTA negotiation, Korea should find out China's policy for FTA negotiation. With this information, Korea will be able to suggest the way to make a profit. Systematic analysis and comparison about previous negotiation cases of China are needed before the negotiation begin.

Key words : FTA, Negotiation style, Investment

국문초록

한·중 양국은 1992년 수교 이래 문화적 공통성과 지리적 인접성 그리고 상호보완적인 경제구조 등을 바탕으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왔다. 특히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으로, 그리고 한국은 중국의 제3대 교역국으로 부상하였으며, 2008년에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다.

현재 국제 통상관계에 있어서 WTO/DDA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데 반해, FTA는 전 세계적으로 심화와 확대를 거듭하고 있으며, 한·중 양국도 각각 그 어느 나라에 뒤지지 않는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FTA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1997년 금융위기 후 절감한 지역 경제협력의 필요성이 요구됨에 따라 중국은 2005년 아세안과 FTA체결을 시작으로 여러 국가에 관심을 표명하였으며, 한국에도 FTA에 추진에 적극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5월 28일에는 이명박 대통령과 중국 원자바오 총리와의 회담에서 이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였는바, 가까운 시일 내에 본격적인 추진협상이 이루어지리라 예측된다.

이에 중국과 FTA의 본격적인 협상에 대비하여, 한국이 어떤 협상방식을 선택할 것인가에 정책적 제언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부 학자들은 한·중 FTA는 포괄적 협상을 하되, 지속적 논의를 위한 프로토콜을 확정하는 지속형 FTA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본 연구는 한·중 FTA는 상품무역·서비스·투자분야를 포함하고 협상에서 일괄적으로 타결하는 포괄적 FTA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Professor, Dept of Air Travel Hotel and tourism, Koguryeo College, Korea. Tel: +82 10 9440 3001. E-mail: shna@kgrc.ac.kr

본 연구는 중국의 기 체결된 FTA 협상사례를 통해 중국의 협상방식의 특징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중국은 현재 아세안, 파키스탄, 칠레 등 개도국과는 단계별 혹은 지속형 FTA 협상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 선진국과는 일괄 타결형 포괄적 FTA 협상방식을 취하고 있다.

중국과의 FTA 협상에 있어서 한국은 농업시장 개방과 국내 이해집단과의 관계 등 쉽지 않은 이슈들이 잔재하고 있으나, 이들은 주로 상품무역 분야에 포진되어 있다. 반면에 중국은 금융·통신 산업이 개방될 경우 중국경제의 전반적인 기반이 위함에 노출하게 되는데, 이들은 주로 서비스무역 분야에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한국은 협상 범위를 상품무역뿐만 아니라 서비스무역 나아가서 투자 분야까지 넓혀야 이슈간의 교환이 가능해지며, 협상타결의 여지도 충분하리라 판단된다. 즉, 한·중 FTA에 있어서 한국은 뉴질랜드, 싱가포르 사례와 유사한 포괄적이며 협상에서 일괄 타결하는 협상방식을 채택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인하여 한국은 관세 철폐로 인한 무역 창출효과와 무역 전환효과 나아가 서비스 분야에서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에 대비한 중국시장의 선점효과도 기대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또한 한국은 중국과의 FTA 협상의 성공적인 타결을 위하여 중국 국가 차원의 FTA 협상방식에 대한 정책기조를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토대로 한국에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협상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본격적인 협상이 이루어지기 전인 현 상황에서 중국의 기 체결된 협상 사례에 관한 체계적인 비교분석도 절실히 필요하리라 판단된다.

주제어: 자유무역협정, 협상방식, 투자

I. 서론

한·중 양국은 1992년 수교 이래 문화적 공통성과 지리적 인접성 그리고 상호보완적인 경제구조 등을 바탕으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왔다. 특히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으로, 그리고 한국은 중국의 제3대 교역국으로 부상하였으며, 2008년에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Strategic Cooperation Partnership concerns)로 격상했다.

현재 국제 통상관계에 있어서 WTO/DDA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데 반해, FTA는 전 세계적으로 심화와 확대를 거듭하고 있으며, 한·중 양국도 각각 그 어느 나라에 뒤지지 않는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FTA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한·중 양국은 이미 2008년 6월에 “제5차 한·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를 완료하였으며, 10월에 열린 한·중 양국 정상회담에서 ‘한·중 FTA 추진의 적극 검토’를 재확인하였다.

가까운 미래에 본격적으로 추진될 한·중 FTA 정부간 협상에서 한국은 과연 어떤 협상방식을 채택할 것인가에 대하여 최근 여러 제안들이 제시되어 왔다. 특히 일부 학자들은 ‘한·중 FTA는 포괄적 협상을 통해 양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되 협상 중에 최종 합의 및 종결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 논의를 위한 프로토콜을 확정하는 이른바 '지속형 FTA'를 추진해야 한다’(지만수, 2008)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이러한 주장은 한·중 FTA협상에서 한국의 국익을 최적화할 수 없으며, 이러한 협상방식은 중국의

FTA 협상방식에 대한 체계적이고 철저한 파악의 부족함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보고 있다. 중국의 기체결 FTA 협상사례를 살펴볼 경우 개도국과 체결한 FTA 즉 아세안 10개국과 칠레·파키스탄 등 국가와 체결한 FTA에서는 상품 분야의 FTA를 핵심으로, 우선적으로 상품무역에 관한 FTA를 체결하고, 차후에 서비스와 투자 부문에 관한 FTA를 협상하고 체결하는 단계적·지속적인 협상방식을 채택하였었다. 그러나 2008년에 선진국인 뉴질랜드·싱가포르와 체결한 FTA는 상품무역과 서비스·투자분야를 모두 일괄적으로 타결하는 ‘포괄적 FTA’ 체결방식을 채택하였다. 한국은 선진국으로서 서비스산업 경쟁력에서 중국보다 비교우위에 있으며, 장기적인 차원에서 중국과는 상품무역의 FTA보다도 서비스와 투자 분야에서의 FTA에서 더욱 큰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은 對中 FTA 협상방식에 있어서, 단계적·지속적인 협상방식보다는 동시에 상품·서비스·투자 등을 모두 아우르는 포괄적 FTA를 체결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또한 한국은 對中 FTA 협상의 성공적 타결을 위하여, 중국 국가차원의 FTA 협상방식에 대한 정책기조를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토대로 한국에 이익이 되는 협상안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본격적인 對中 FTA 협상이 들어가기 직전인 현시점에서 한국은 중국의 기체결 FTA 협상사례에 관한 체계적인 비교 분석이 시급하고 절실하며, 중국의 FTA 협상방식의 기본 특징과 변화에 대한 이해와 철저한 파악이 필요하다.

II. 중국의 FTA 추진전략과 현황

1. FTA의 정의와 협상방식

1.1. FTA의 정의

FTA(Free Trade Agreement)란 자유무역 협정으로 나라와 나라 혹은 지역 사이에 관세 및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 자유화를 추구하고, 이를 통하여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시장 확대에 따른 공동의 경제적 이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양국 간 또는 지역 간에 체결하는 협정을 말한다. 이러한 FTA는 시장 확대뿐만 아니라 국가간 상호 무역증진 및 상품과 서비스 이동의 자유화로 계약국 간의 규모경제의 효과와 학습효과도 수반하기 때문에 세계 각국은 모두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FTA는 지역무역협정(RTA: Regional Trade Agreement)의 대종을 이루고 있으며, WTO 출범 이후 오히려 확산 추세에 있다. 그 주요 원인은 WTO에 의한 다자간 협상방식은 회원국 수의 급증으로 회원국 간의 합의 도출이 곤란하며, 장기간의 협상이 소요되나, FTA는 양국 간 협상방식으로 합의점 도출 및 협상 진행이 빠르기 때문이다.

1.2. FTA의 협상방식

FTA는 1947년 GATT 제24조에서 GATT의 일반 원칙인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 대우의 예외로 인정되었다. 따라서 FTA 체결국은 배타적인 무역 특혜를 서로 부여할 수 있게 되었으며, 그 적용대상은 상품무역에 한정되었다. 그러나 1950년대로부터 1970년대에 걸쳐 선진국 경제가 점차 서비스경제로 이행하고, 서비스 부문이 선진국 GDP의 절반을 훨씬 상회함에 따라 서비스산업 규제가 점차 국제문제로 취급되기 시작하였다. 결국 서비스 협상은 우루과

이라운드(UR)협상에서 처음으로 WTO 다자 간 무역체제에 편입되었으며, 1994년에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그 수준은 비교적 낮아 만족스럽지 못하며, 최혜국 대우 원칙에서 벗어나는 예외가 광범위하게 인정되었다.

현재 FTA를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국 간의 발전 격차 및 기술력 격차의 존재와 비교우위 산업 및 비교열위 산업의 상이함으로 선진국과 개도국은 대체로 서로 상이한 FTA 협상방식을 취하고 있다. 개도국은 FTA를 체결함에 있어서, 상품분야의 무역자유화 또는 관세인하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서비스무역과 지적 재산권 분야는 될수록 협상에서 제외하거나, 차후에 단계적으로 혹은 지속적으로 협상하고자 한다. 그 주요 원인은 서비스 무역과 지적 재산권에 있어서, 개도국은 선진국에 비해 경쟁력에서 비교열위에 있으며, 서비스 무역과 지적 재산권은 과점적인 특성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보험·통신·운송 등 상업적인 서비스는 발달한 정보와 지식 및 네트워크를 소요하며, 브랜드와 지적 재산권에 대한 보호는 특허권의 장기적인 지속성과 독점성을 보장한다. 따라서 상기 분야의 FTA를 체결하게 되면 개도국은 독점가격으로 상업 서비스와 지적 재산권을 구매할 수밖에 없으며, 또한 모방과 복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상기 분야에서의 선진국의 비교우위 지위는 장기간 유지되며, 결국 개도국은 기술적으로 선진국을 초월할 수가 없게 된다.

반면에 선진국은 동시에 상품무역·서비스·투자 등을 포함하는 높은 수준의 포괄적 FTA의 체결방식을 선호한다. 포괄적 FTA란 경제활동의 전 영역을 포함하는 자유무역협정으로서 상품무역뿐만 아니라 금융·교육·의료·법률 등 서비스산업도 협정대상에 포함시키며, 나아가 무역의 패턴과 성격 그리고 그 효과에 영향을 주는 투자·지적 재산권·시장 접근권·경쟁 정책 심지어 노동·환경 등도 협정 대상에 포함시킨다(최태욱, 2006). 포괄적 FTA는 선진국으로 하여금 체결국의 서비스산업 시장의 개방과 더불어 서비스 무역의 수출을 대폭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으며, 지적 재산권의 보호와 시장 접근권의 취득 및 투자보장 등을 통하여 단기간에 경제활동의 전 영역을 인위적 절차에 의해 하나로 통합할 수 있게 한다.

한국은 2003년 이래 동시다발적으로 FTA를 추진해왔으며, 최근에는 거대경제권과 자원부국 및 주요 거점 경제권을 중심으로 FTA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FTA 협상방식에 있어서, 상품분야에서의 관세 철폐 뿐만 아니라, 서비스·투자·정부조달·지적 재산권·기술표준 등을 모두 포함하는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FTA를 지향하고 있다. 그 주요 원인은 높은 수준의 포괄적 FTA를 통하여 FTA 체결 효과를 극대화하며, 다자주의를 보완하고, 국내 제도의 개선 및 선진화를 도모하기 위해서이다.

2. 중국의 FTA 추진 현황

2002년 11월 캄보디아에서 체결한 “중·아세안 전면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약서”는 중국이 첫 번째로 체결한 FTA 관련 법률문서이며, 중국은 이로부터 실질적인 FTA 협상체제를 가동하였다.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현재 중국이 체결한 FTA는 12개로서 29개 국가와 지역이 포함되며, 이들 국가·지역들과의 무역액은 2007년 대외무역총액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아시아에서는 아세안과 FTA “상품무역협정”과 “서비스무역협정”을 체결하고 현재 투자협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파

키스탄과 FTA “상품무역협정”과 “서비스무역협정” 체결하였으며, 싱가포르와 포괄적 FTA를 체결하였다. 남미주에서는 칠레와 FTA “상품무역협정”과 “서비스무역협정”을 체결하였으며, 대양주에서는 뉴질랜드와 포괄적 FTA협정을 체결하였고, 유럽에서는 아이슬란드와 FTA 협상중에 있고, 아프리카에서는 남아프리카개발공동체(SADC)와 FTA 협상 중에 있다. (<표 1> 참조)

<표 1> 중국의 FTA 체결 현황

국가·지역	기 체결	협상 상태
아세안	-2004. 11 FTA [상품무역협정] 체결 -2005. 7 FTA [상품무역협정] 발효 -2007. 1 제1단계 [서비스무역협정] 타결	-제2단계 서비스무역 및 투자분야 협상중
칠레	-2005. 11 FTA [상품무역협정] 체결 -2006. 7 FTA [상품무역협정] 발효 -2008. 4 FTA [서비스무역협정] 체결 -2009. 1 FTA [서비스무역협정] 발효	-투자분야 협상 논의중
파키스탄	-2006. 11 FTA [상품무역협정] 체결 -2007. 7 FTA협정 발효 -2009. 2 FTA [서비스무역협정] 체결	
뉴질랜드	-2008. 4 포괄적 [FTA 협정] 체결	
싱가포르	-2008. 10 포괄적 [FTA 협정] 체결	
호주	-2003, [중·호주 공동무역 경제체제] 결성.	-FTA 협상중(2005)
GCC		-FTA 협상중(2005)
페루		-FTA 협상중(2008)
아이슬란드		-FTA 협상중(2007)
SADC		-FTA 협상중(2004)

III. 중국의 FTA 협상사례 분석

1. 개도국 사례

1.1. 중·아세안 FTA

중·아세안 FTA는 중국이 대외로 체결한 첫 번째 자유무역협정이다.

1.1.1. 협상방식

중·아세안 FTA는 당사국 간 경제 발전도의 차이와 경제규모의 차이를 충분히 고려하여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협상방식을 채택하였다. 우선적으로 중·아세안 FTA의 핵심은 상품무역의 FTA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상품무역의 FTA를 체결한 후 지속적으로 서비스무역과 투자분야의 FTA를 협상·체결하기로 하였다.

구체적인 협상 과정을 살펴볼 경우, 2000년 11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중국과 아세안의 11+1의 제4차 수뇌회의에서 중·아세안 FTA에 관하여 본격적으로 논의하였으며, 2002년 5월 제1차 중·아세안 협상위원회 회의에서 협상원칙·모델·내용·스케줄 등 구체적인 협상안을 마련하였다. 결국 2002년 11월에 아세안 11국은 모두 중국의 시장 경제지위를 인정하였으며, “중·아세안의 전면적인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을 체결하였으며, FTA의 기본틀과 기본방향을 제시하였다. 17차에 달하는 마라톤협상을 거쳐, 드디어 2004년 11월에 “상품무역협정”을 체결하였으며, 2005년 7월에 발표되었다.

중·아세안 FTA “상품무역협정”의 체결과 더불어 중국과 아세안 10국은 서비스무역과 투자분야의 FTA 협상도 지속적으로 개시하였다. 결국 2007년 1월에 제1단계 “서비스무역협정” 체결하고, 현재 제2단계 서비스무역 추가 협상과 중·아세안 FTA 투자협상도 현재 협상중에 있다.

1.1.2. 협정내용

① 상품무역협정

중·아세안 FTA “상품무역협정”은 본문 23개 조항과 3개 부속서를 포함하고 있다.

<표 2> 중·아세안 FTA 관세삭감 스케줄표 (정상품목)

	2005년	2007년	2010년	2012년	2015년	2018년
중국과 아세안 6개국	HS 6단위 40% 제품의 관세를 5%이하로 인하	HS 6단위 60% 제품의 관세를 5%이하로 인하	대부분 제품 관세 철폐	모든 제품 관세 철폐	비관세	비관세
4개국			2009~2013년 국가별, 단계별로 관세를 5% 이하로 인하	대부분 제품 관세 철폐	모든 제품 관세 철폐	

상품무역 협정의 관세 삭감 모델에서는 우선 쌍방의 상품을 정상품목과 민간품목으로 구분하고, 정상품목에 한해서는 중국과 아세안 6개국은 2005년 7월 1일부터 2010년까지 일부 품목을 제외한 모든 품목에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였으며, 2012년에는 예외품목 없이 모든 품목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였다. 아세안 신(新) 회원 4개국에 한해서는 정상품목은 2015년까지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모든 품목에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였으며, 2018년에는 모든 품목에 대해 관세를 철폐시키기로 하였다.(<표 2> 참조)

민감품목은 또한 일반 민감품목과 고도 민감품목으로 나누었으며, 중국과 아세안 6개국은 HS코드 6단위 품목 400개에 한해 민감품목을 유지하게 하고, 수입액은 2001년 수입총액의 1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였다. 그 중 일반 민감품목은 2012년까지 20%이하로 관세를 삭감하고, 2018년에는 0~5%수준까지 삭감 하도록 하였다. 고도 민감품목은 HS코드 6단위 품목 100개를 초과하지 않으며, 이 종류의 제품은 2015년까지 관세를 50%까지 삭감하기로 하였다. 아세안 신회원 4개국에 한해서는 민감품목 500개를 유지하

게 하였으며, 고도 민감품목은 150개를 유지하게 하였다. (<표 3> 참조)

<표 3> 중·아세안 FTA 관세 삭감을 (민감품목)

품목	국별	품목	2012년	2015년	2018년	2020년
일반	중+6개국	400개 품목, 2001년 수입총액의 10%이하	관세를 20% 이하로 인하		관세를 5%이하로 인하	현 상태 유지
	4개국	500개 품목을 초과하지 않음		관세를 20% 이하로 인하		관세를 5%이하로 인하
고도	중+6개국	100개 품목 이하		관세를 50% 혹은 그 이하로 인하		
	4개국	150개 품목 이하			관세를 50% 혹은 그 이하로 인하	

중국이 제시한 민감품목은 주로 곡물(쌀 등 HS 제10류), 제분공업의 생산품(밀가루 등 HS 제11류), 식물성 유지(팜올레인 등 HS 제15류), 당류와 설탕(사탕수수 등 HS 제17류), 파인애플(HS 제20류), 담배(HS 제24류), 사진용·영화용 재료(HS 제37류), 목재와 그 제품(HS 제44류), 지(紙)와 판지 및 제지용 펄프(HS 제48류), 양모·섬수모(HS 제51류), 폴리에스테르와 아크릴(HS 제54류와 제55류), 모터사이클과 차량추진용 엔진(HS 제84류), 조명용·신호용 기기(HS 제85류), 트랙터·승용자동차와 부품(HS 제87류), 순항선·부선(HS 제89류) 등이다.

원산지규정에 있어서는 실질적 변형기준으로, 생산이 2개국 이상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역내 부가가치 포함비율이 40% 이상인 경우'와 '최종 제조공정이 역내 회원국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조건 하에 부가가치기준(40%이상)을 우선기준으로 채택하였으며, 계산 방법은 공제법을 사용하였다.

② 서비스무역 협정

제1단계 서비스무역 협정에서 서비스무역의 개방은 점진적인 방식을 채택하였는 바, 각국의 개방영역과 개방정도는 상이하며, 협정 양허안도 제1차 개방에 불과하다.

협정에 따르면 중국은 주로 건축·환경·교통·스포츠·비즈니스 등 5개 분야의 26개 부문에서 서비스시장을 개방하였다. 한편, 아세안 국가들은 금융·통신·교육·관광·건축·의료·서비스 분야에서 중국에 서비스시장을 개방하였으며 국가마다 상이하게 개방영역과 개방정도를 선택하였다.

1.2. 중·칠레 FTA

중·칠레 FTA는 중국이 아세안과의 FTA 체결 이후 단일국가와 맺은 최초의 FTA 협정이며, 동시에 남미국가와 맺은 첫 번째 FTA 협정이다.

1.2.1. 협상방식

중국과 칠레는 우선 중·칠레 FTA의 핵심은 상품무역의 FTA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상품무역의 FTA를 우선 협상·체결한 후, 서비스무역과 투자분야의 FTA는 차후에 단계적으로 지속적으로 협상·체결하는 방식을 정하였다.

구체적인 협상과정을 살펴볼 경우, 중·칠레 FTA 협상은 2001년말에 칠레의 정부 대표들이 APEC회의에서 먼저 중국정부에 정식으로 FTA 추진의사를 제안하였으며, 2004년 4월~10월까지 양국 전문가들이 타당성 연구를 중요하였다. 2004년 11월 중국 후진타오 주석의 칠레 방문시 칠레에서는 중국의 ‘시장경제지위’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였으며, 드디어 중·칠레 FTA 협상이 개시되었다. 양국은 2005년 1월~10월까지 5차의 공식협상을 걸쳐 11월에 부산 APEC회의에서 FTA “상품무역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칠레 의회의 비준을 거쳐 2006년 7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상품무역에 관한 FTA가 발효된 후, 중국정부와 칠레정부는 지속적으로 2007년 1월부터 서비스무역에 관한 FTA협상을 개시하였으며, 결국 2008년 4월에 중·칠레 “서비스무역협정”을 체결하고, 2009년 1월에 발효되었다. 중·칠레 투자분야의 FTA는 2009년 1월에 개시되었으며, 현재 2차리의 협상을 거치었다.

1.2.2. 협정내용

① 상품무역 협정

중·칠레 FTA “상품무역 협정”은 본문 13장 121개 조항과 6개의 부속서로 되어 있다.

관세 삭감 모델에서는 우선 상품을 정상품목과 민감품목으로 나누었으며, 그중 민감품목은 과도기 관세 삭감품목과 예외품목으로 나누었다. 상품관세의 철폐에 있어서는 즉각 철폐와 2·5·10년에 걸치는 철폐로 구분하였으며, 자국 산업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민감품목은 5·10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철폐하고, 민감도가 높은 일부 품목은 아예 관세 철폐계획 예외항목으로 하였다.

중국은 37.2%의 품목에 대해 평균관세 8.49%수준에서 협정발효 후 즉시 철폐하기로 하였으며, 25.8%의 품목에 대해서는 평균관세 8.49%의 수준에서 2년내에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였으며, 13%의 품목에 대해서는 평균관세 8.49%의 수준에서 5년내에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고, 21%의 품목에 대해서는 10년내에 평균관세 14.97%에서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였다.

칠레는 74%의 품목에 대해 평균관세 10.64%수준에서 협정발효 후 즉시 철폐하기로 하였으며, 13%의 품목에 대해서는 평균관세 6.69%수준에서 발효 5년내에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고, 10%의 품목에 대해서는 평균관세 6%에서 발효 10년내에 철폐하기로 하였다.(<표 4> 참조)

<표 4> 중·칠레 FTA 관세 삭감을

철폐 시기	중 국		칠 레
	8단위 품목(개)	비 중	비 중
즉각 철폐	2806	37.2%	74%
1년 이내	1947	25.8%	0%
5년 이내	973	12.9%	13%
10년 이내	1610	21.3%	10%
예외 품목	214	2.8%	3%
합계	7550	100%	100%

중국인 제시한 관세인하 예외품목은 주로 밀·옥수수·쌀(HS 제10류), 밀가루·메슬린가루·옥수수가루·곡물의 분쇄물 및 조분(HS 제11류), 대두유·낙화생유·팜유·해바라기씨유·유채유·옥수수유(HS 제15류), 당류와 설탕(HS 제17류), 파티클보드·섬유판·합판(HS 제44류), 지(紙)와 판지용 펄프·지 또는 판지 제품(HS 제48류), 우표·수입인지·인쇄된 엽서(HS 제49류), 섬유모·조수모·마모사(HS 제51류), 면화(HS 제52류) 등이 포함되어 있다. 칠레측에서 제시한 관세인하 예외품목은 주로 사탕·타이어·의류 등이다.

원산지 규정에 있어서는 실질적 변형기준으로 부가가치 기준을 채택하였으며, 부속서에 따로 규정한 특정품목을 제외하고는 역내 부가가치가 40%이상이어야 원산지제품으로 인정되며, 계산방법은 공제법을 사용하였다.

② 서비스무역 협정

서비스무역 협정은 본문 22개 조항과 2개의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다. 조항의 내용은 주로 정의와 범위·의무·개방 내역·분쟁 해결 등이다. 중국이 개방한 부문은 주로 경영컨설팅·광산채굴·환경·항공운수 등 23개 부문이며, 칠레가 개방한 부문은 법률·건축설계·부동산·광고·관리자문·광산채굴·임대·교육·환경·관광·체육·항공운수 등 37개 부문이다. 부속서는 ‘상무인원의 임시 입국’과 ‘서비스 개방에 관한 양허표’로 구성되어 있다.

2. 선진국 사례

2.1. 중·뉴질랜드 FTA

중·뉴질랜드 FTA는 중국이 처음으로 OECD국가와 체결한 FTA이며, 중국이 처음으로 상품·서비스·투자분야를 일괄 타결한 FTA이다.

2.1.1. 협상방식

뉴질랜드는 선진국으로서 높은 수준의 포괄적 FTA를 지향하고 있으며, 중국은 처음으로 뉴질랜드와 수준은 비교적 낮지만 상품무역·서비스무역·투자분야를 모두 포함하는 일괄 타결형 포괄적 FTA를 체결하기로 하였다.

구체적인 협상과정을 살펴보면, 2004년 5월 중국과 뉴질랜드는 “무역과 경제협력 협의서”를 체결하였으며, 뉴질랜드는 중국의 시장경제 지위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였다. 그리고 2004년 6월~9월까지

지 양국의 전문가 그룹은 FTA에 관한 타당성 연구를 완료하였으며, 11월에는 정식으로 본격적인 FTA 협상을 개시하였다. 15차에 걸치는 협상을 통하여 드디어 2008년 4월에 베이징에서 최종적으로 중·뉴질랜드 FTA를 체결하였으며, 2008년 10월 1일에 발효되었다.

2.1.2. 협정내용

협정은 본문 18 장과 214 조항 그리고 14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다.

상품무역에 있어서, 중국은 협정 발효 이후 관세율이 0~5%의 상품에 한해서는 관세를 즉각 철폐하기로 하였으며, 관세율이 5~20%인 상품에 한해서는 2012년에 철폐하기로 하고, 관세율이 20%이상인 상품에 한해서는 2013까지 철폐하기로 하였다. 뉴질랜드는 관세율이 0~5%인 상품에 한해서는 관세를 즉각 철폐하기로 하였으며, 관세율이 5~12%인 상품에 한해서는 2012년에 철폐하기로 하였으며, 관세율이 12%이상인 상품에 한해서는 2013년에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였다.

중국은 낙농제품 특히 식용오팔, 오렌지, 오렌지주스, 양과 쇠고기 등 민감품목에 있어서는 2016년에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였으며, 버터, 치즈 및 액체우유는 2017년에 철폐하기로 하고, 전지 및 탈지 분유는 2019년에 철폐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1월 1일 이전에 대부분의 상품의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였다. 뉴질랜드는 협정 발효이후 63.6%의 상품관세를 즉각 철폐하고, 2016년 1월 1일전에 모든 상품의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일부 종이제품, 가공목재품, 밀, 설탕, 쌀등은 예외 품목으로 관세철폐 계획에서 제외하였다. 그리고 모직물(Wool)과 모직물로 만든 상의(Wool tops) 품목에 대해서는 '특정국 관세할당 (Country-specific tariff quota)'을 적용하였다.

뉴질랜드는 중국의 섬유, 일부 의류와 신발과 카페트에 대해서는 2014년에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였으며, 주요 의류와 신발에 대해서는 2016년에 철폐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뉴질랜드는 예외 품목을 규정하지 않았다.<표 6> 참조)

<표 6> 중·뉴질랜드 FTA 관세 삭감율

철폐 시기	즉시	2012년	2013년	2014년	2016년	2017년	2019년	예외 품목
중국	관세율이 0-5%인 품목	관세율이 5-20%인 품목	20% 이상인 품목		식용오팔 · 오렌지 · 양 · 쇠고기	버터 · 치즈 · 액체우유	전지 · 탈지 분유	일부 종이제품 · 설탕 · 쌀
뉴질랜드	관세율이 0-5%이상 품목	관세율이 5-12% 이상 품목	12%이상 품목	섬유 · 카페트	의류와 신발	모든 제품 관세 철폐		

원산지 기준에 있어서, 중·뉴질랜드 FTA에서는 처음으로 실질적 변형의 주요 기준으로 세번

변경기준을 채택하였다. 특히 '부속서5'에서 '제품의 특정 원산지기준(产品特定原产地标准)이라는 명목으로 HS4단위와 HS6단위의 세번 변경기준을 주요기준으로 하였으며, 아울러 일부 품목에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의 조합기준과 선택기준도 보완기준으로 채택하였다.

서비스무역에 있어서, 중국은 비즈니스 · 환경 · 컴퓨터 · 경영컨설팅 · 스포츠 및 레저 · 항공운송 · 육상운송 등 15개 부문의 서비스무역을 WTO 양허안보다 높은 수준으로 개방하기로 하였다. 뉴질랜드는 비즈니스 · 건축 · 교육 · 환경 등 16개 부문에서 WTO 양허안보다 개방수준을 높이기로 하였다.

투자분야에 있어서, 양국은 투자관리 · 경영 등에서 내국민대우를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향후 제3국과의 FTA에서 중·뉴질랜드 FTA보다 높은 수준의 개방을 허용할 경우 이러한 조건이 당사국에도 자동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2.2. 중·싱가포르 FTA

중·싱가포르 FTA는 중국이 처음으로 동아시아 국가와 체결한 FTA이며, 중국이 두 번째로 상품 · 서비스분야를 일괄 타결한 포괄적 FTA이다.

2.2.1. 협상방식

중국과 싱가포르의 FTA 협상목적은 중·아세안 FTA보다 범위가 넓고 수준이 높은 포괄적 FTA를 체결하는 것이며, 중·아세안 FTA의 새로운 발전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과 싱가포르는 처음부터 중·싱 FTA는 상품무역과 서비스무역을 일괄 타결하는 포괄적 FTA라는 원칙하에 2006년 8월에 협상을 개시하였다. 8차에 달하는 협상을 거쳐 결국 2008년 9월에 정식으로 중·싱가포르 FTA 협정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양국은 경제협력을 더욱 긴밀히 하고, 양국 관계는 새로운 면모로 발전하게 되었으며, 동아시아 경제 통합에도 적극적인 영향을 주게 되었다. 중·싱 FTA는 중국이 처음으로 아시아국가와 체결한 포괄적 FTA로서 또한 싱가포르와 같이 선진국이며, 대외무역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한국에 있어서도 중요한 참고가치가 있게 되는 것이다.

2.2.2. 협정내용

협정은 포괄적 FTA로서 본문은 14개장과 115개 조항으로 구성되었으며, 7개의 부속서를 포함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2009년 1월 1일전까지 100%의 대중 수입제품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였으며, 중국은 2012년 1월 1일까지 97.1%의 대 싱가포르 수입제품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였다. 원산지기준에 관해서는 실질적 변형기준으로 세번 변경기준과 부가가치 기준(40%이상)을 채택하기로 하였으나 특정물품의 원산지 기준을 규정하는 부속서2는 현재 협상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다.

서비스무역에 있어서, 양국은 낮은 수준의 개방을 채택하였는 바, 주로 의료 · 교육 · 회계 등 서비스무역에서 WTO 기준보다 더 높은 수준의 약속을 이행하기로 하였으며, 이밖에 노무합작(勞務合作) 관련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3. 중국의 기체결 FTA 협상사례 특징

현재 중국의 FTA 협상사례들을 비교 분석해 볼 경우, 아래와 같은 몇 가지 특징을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중국은 3단계에 이르는 협상 추진단계를 취하고 있다.

우선 상대국과 FTA의 추진의사를 확인한 후, 제1단계로 양국 전문가그룹을 결성하여 FTA 타당성에 대한 공동연구(FTA feasibility study)를 진행하고, 그 다음으로 제2단계에서는 상대국이 중국의 시장경제지위를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며, 제3단계에서는 기존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협상을 전개하여 FTA협정을 최종 타결한다.

둘째, 중국의 FTA 협상방식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중국의 기체결 FTA를 살펴 볼 경우, 중국은 개도국인 아세안·파키스탄·칠레 등 국가와는 단계별 혹은 지속형 FTA 협상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반면에 선진국인 뉴질랜드·싱가포르 등 국가와는 일괄 타결형 포괄적 FTA 협상방식을 취하고 있다.

중·아세안 FTA의 경우 상품무역협상은 2001년 11월에 개시되어 2004년 11월에 타결되었으며, 서비스무역 협상은 상품무역 협상이 타결된 지 2년 반이 지난 2007년 1월에 타결되었으며, 현재 제2단계의 서비스무역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투자분야 관련 협상은 아직도 타결되지 않았다. 칠레의 경우 상품무역협정은 2005년 11월에 체결되었으나, 서비스무역협상은 2년 5개월이 지난 2008년 4월에 체결되었으며, 투자분야의 협상은 검토중에 있다. 파키스탄의 경우 상품무역협정은 2006년에 체결되었으나, 서비스와 투자 관련 협정은 아직까지 체결되지 않았다.

반면에 뉴질랜드와는 3년 5개월에 15차례의 기나긴 협상을 걸치었지만 상품·서비스·투자분야를 포함하는 포괄적 FTA를 체결하였다. 싱가포르와는 중·아세안 FTA를 토대로 2년 2개월만에 상품·서비스분야를 포함하는 포괄적 FTA를 체결하였다. 뉴질랜드는 OECD회원국이며, 싱가포르는 한국과 더불어 ‘아시아의 4룡’ 중의 하나이다.

셋째, 중국은 FTA 협상에서 상품무역에 관해서는 과감하고 결단력이 있는 모습을 보이거나, 서비스무역과 투자자유화에 관해서는 아주 신중하고 보수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중국은 상품무역 분야의 FTA에 있어서는 경쟁력이 높은 제조업을 바탕으로 신속한 협상을 요구하는 반면,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국내 경제에 리스크가 큰 서비스무역 분야에 있어서는 아주 신중한 자세로, 많은 협상시간을 소모하고 있다.

단계별 혹은 지속형 FTA의 경우, 아세안 2년·칠레 1년·파키스탄 1년에 걸쳐 신속히 상품무역협정을 체결하였으나, 서비스무역협정에 있어서는 아세안·파키스탄과 현재까지 협상중에 있으며, 최종 타결은 아직도 불투명하다. 특히 금융·통화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아니 절대 개방할 수 없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표 6> 참조)

마지막으로 중국의 기체결 FTA 협정에서 핵심 위치에 있는 상품무역 협정에서는 아래와 같은 특징을 볼 수 있다.

상품의 관세양허에 있어서, 자국 관련 산업에 주는 피해 정도에 따라 상품을 정상품목·민감품목·예외품목(혹은 고도 민감품목)으로 나눈다. 그리고 민감품목의 관세 삭감에 있어서 장시기의 유예기간을 정하고 있으며, 예외품목은 아예 관세 철폐 계획에서 제거하고 있다. 중·아세안 협정에서는 민감품목의 경우, 2005년 협정발효에서 2018년에야 5%이하의 관세를 유지하게 함으로써, 13년의 유예기간을 정하였으며, 고도 민감품목의 경우 최종 관세를

줄곧 50%까지 유지할 수 있게 하였다. 중·칠레 FTA협정에서는 민감품목에 5년~10년의 유예기간을 정하였으며 민감도가 특히 높은 일부 품목들은 아예 관세 철폐계획 예외항목으로 제출하였다. 파키스탄과의 협정에서는 10%정도의 예외 항목을 인정하고 있으며, 수입금지 상품까지 포함되었다.

<표 6> 협상 개시이후 중국의 FTA 타결 소요시간

단위: 년

	중·아세안 FTA	중·칠레 FTA	중·파키스탄 FTA	중·싱가포르 FTA	중·뉴질랜드 FTA
상품무역 협정	2	1	1	2	3.5
서비스무역 협정	협상 중	3.5	3.5		
투자관련 협정	협상 중	협상 중	1	미정	

또한 원산지 기준에 있어서, 중국은 초기의 중·아세안 FTA와 중·칠레 FTA 및 중·파키스탄 FTA에서는 실질적 변형기준으로 부가가치기준을 우선으로 적용하였으며, 세 번 변경기준은 보완적으로 일부 특정제품에만 적용하였다. 그러나 2008년 4월에 체결한 중·뉴질랜드FTA에서는 절대 대부분 품목에 세 번 변경기준을 적용하였으며, 일부 특정품목에 한하여 부가가치 기준을 보완적으로 적용하였다. 부가가치 기준의 계산 방법에 있어서는 이미 체결한 FTA에서 모두 단일 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다.

IV. 중국의 기존 FTA 협상방식이 對中 FTA협상에 대한 시사점

1. 한·중 FTA 논의 경과

한·중 양국은 2004년 11월 칠레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에서 한국의 노무현 대통령과 중국의 후진타우 주석이 한·중 FTA 민간공동연구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한·중 FTA 민간공동연구는 2005년 3월에 개시되어,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중국의 국무원발전연구중심(DRC)이 간사기관으로 선정되어, 한·중 FTA의 거시 경제적 효과와 민감분야 수출 및 산업별 영향 등에 관하여 공동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리고 2005년 11월에 한국은 중국 후진타우 주석의 방한과 더불어 중국의 시장경제 지위를 공식 인정하였다.

2006년 11월에는 중국 상무부와 한국 외교통상부가 2007년부터 한·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를 진행하기로 합의 하였으며, 2007년 3월·7월·10월과 2008년 2월·6월까지 5차례에 걸치는 공동연구회의를 거쳤다.

산·관·학 공동연구 종료 후, 양국 업계·학계 등과의 간담회·공청회 등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한·중 FTA 협상개시 여부가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2. 중국의 기존 FTA 협상방식이 對中 FTA 협상에 대한 시사점

한·중 FTA 민간 공동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중 FTA 체결시 한국의 GDP는 2.4~3.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지만수, 2008). 그리고 한국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006년 10~11월에 415개 회원을 상대로 실시한 "한·중 FTA에 관한 기업의견조사"에 의하면 이들 중 71.3%가 한·중 FTA에 찬성하고 있으며, 28.7%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조업의 65.5%와 서비스업의 83.6%가 찬성하였다(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조사본부 FTA팀, "韓中 FTA 기업 의견조사 결과", 2006).

즉, 한·중 FTA의 경제적 효과에 관하여 학계와 업계 모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서비스업계의 지지율이 제조업을 훨씬 능가하고 있다. 그 주된 이유는 한·중 FTA 체결시, 관세인하로 중국시장을 선점할 수 있고, 한국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일본·대만제품에 비해 가격에서의 비교우위를 점할 수 있으며, 중국의 서비스산업은 경쟁력이 취약하고 개방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은 한·중 FTA에 있어서 단계별 혹은 지속형 FTA 보다는 상품과 서비스 및 투자분야를 포함한 포괄적 FTA를 일괄적으로 타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유리하다. 특히 일부에서 제기되는 "한·중 FTA는 포괄적 협상을 통해 양측의 이익을 극대화하되, 협상을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이른바 지속형 FTA 추진"방식은 반드시 학계·산업계 특히 국민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중국의 FTA 협상사례에서 對中 FTA 협상방식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한·중 FTA는 상품·서비스·투자 등을 모두 포괄하며, 협상에서 최종적으로 일괄 타결하는 방식으로 되어야 한다.

한·중 FTA 협상에 있어서 한국은 농업시장 개방·민감품목과 예외품목의 선정·국내 이해집단과의 관계 조정 등 쉽지 않은 이슈들이 등장하게 되며, 이들은 주로 상품무역 분야에 포함되어 있다. 반면에 중국은 금융·통신 산업이 개방될 경우, 중국경제의 기반이 위협에 노출되게 되는 바, 이들은 주로 서비스무역 분야에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한국은 협상 범위를 상품무역뿐만 아니라 서비스무역 나아가서 투자까지 넓혀야 이슈간의 교환이 가능해지며, 협상타결의 여지도 충분히 남길 수 있다. 협상중에 자타가 공인하는 한국의 취약한 농수산업에 대한 대응카드는 응당 중국의 금융업이나 통신업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둘째, 한국이 지속형 FTA로 갈 경우, 그것은 단기간의 '일시적 효과'(temporary effect)에 불과할 것이다.

한·중 FTA가 우선 상품무역 FTA로 되어, 단기간에 관세철폐로 '가격효과'와 '전환효과'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중국의 기술혁신과 생산성 증대 및 격차 해소를 무역효과의 상쇄도 충분히 존재한다. 따라서 상품무역의 FTA는 '일시적 효과'에 불과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반면에 한국은 FTA 서비스무역협정을 기약할 수 없어, 서비스분야에서의 미국·유럽·일본에 앞서 중국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잃을 수 있다. 나아가서 한국의 해외투자에서 1위인 對中투자에 있어서 중국경내에서의 한국투자자유화·투자보장을 도모할 기회는 더욱 기약할 수 없는 것이다.

즉, 한·중 FTA가 상품·서비스·투자 등을 포함하는 일괄 타

결 협정이어야 한국에 큰 득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셋째, 한국은 중국과의 FTA를 서두르기보다는 차분한 태도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협상에 임해야 한다. 중국의 협상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단계형 혹은 지속형 FTA 추진일 경우, 한·중 FTA 상품무역 협정은 약 1~2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서비스무역 협정은 4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고, 투자분야의 협정은 기대하기 어렵다.

반면에 포괄적이고 일괄 타결형 FTA에서는 1차적으로 3~4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비록 시간이 긴 것 같으나, 장기적인 시각에서 서비스무역과 투자분야의 FTA를 고려할 경우, 오히려 시간이 더욱 단축될 수 있으며, 동아시아지역의 경제통합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넷째, 뉴질랜드와 싱가포르는 한국에 참고가치가 큰 협상사례를 제공하였다.

뉴질랜드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OECD국가이며, 싱가포르는 한국과 더불어 '아시아의 4룡'을 자랑하는 국가이다. 따라서 이들은 한국과 경제발전 면에서 유사한 수준에 있으며, 기체결 FTA에서도 포괄적 FTA를 추구하여 왔다.

따라서 한국도 뉴질랜드·싱가포르사례처럼 중국과 포괄적 협상방식을 요구할 수 있는 이유가 충분히 존재하는 것이다.

V. 결론

한·중 FTA는 상품무역·서비스·투자분야를 포함하고 협상에서 일괄적으로 타결하는 FTA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서비스와 투자분야에 있어서는 낮은 수준의 FTA가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중국의 기체결 FTA 협상사례를 통해, 중국의 FTA 협상방식의 특징과 유형을 파악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중국은 개도국인 아세안·파키스탄·칠레 등 국가와는 단계별 혹은 지속형 FTA 협상방식을 채택하고 있었으며, 선진국인 뉴질랜드·싱가포르 등 국가와는 일괄 타결형 포괄적인 FTA 협상방식을 채택하였다.

한·중 FTA 협상에 있어서 한국은 농업시장 개방과 국내 이해집단과의 관계 조정 등 쉽지 않은 이슈들이 대거하고 있다. 이들은 주로 상품무역 분야에 포함되어 있다. 반면에 중국은 금융·통신 산업이 개방될 경우, 중국경제의 기반이 위협에 노출되게 되는 데, 이들은 주로 서비스무역 분야에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한국은 협상 범위를 상품무역 뿐만 아니라 서비스무역 나아가서 투자까지 넓혀 이슈간의 교환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진다.

즉, 한·중 FTA에 있어서 한국은 뉴질랜드·싱가포르 사례와 유사한 포괄적이며, 협상에서 최종적으로 일괄 타결하는 협상방식을 취해야 할 것이다. 포괄적 FTA의 체결로 한국은 관세철폐로 인한 무역창출효과와 무역전환효과 및 서비스분야에서의 미국·유럽·일본 등 선진국에 대비한 중국시장의 선점효과도 기대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Received: November 01, 2010.

Revised: November 25, 2010.

Accepted: December 08, 2010.

References

- 남영숙, 이장수, 지만수, 정인교(2004), *한·중 FTA의 경제적 파급 효과와 주요 쟁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50-53.
- 서창배(2007), “中國의 FTA 政策에 담긴 政治·經濟的 含意”, *韓中 社會科學研究*, 제5권 제1호, 78-79.
- 양평섭, 이장규, 박현정, 여지나, 배승빈, 조현준(2007), *한국의 주요국별·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중화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78-190.
- 여수옥(2005). “중·칠레 FTA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세계경제초점, KIEP*. 3-4.
- 유현정(2010), “중국·아세안 FTA 전면발효와 우리의 대응방안”, *정세와 정책*, 2월호, 12-15.
- 이장규, 이인구, 여지나, 조현준(2006), *중국의 FTA 추진전략과 정책적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10-123.
- 전국 경제인 연합회(2006), *韓中 FTA 기업 의견조사 결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 조사본부 FTA팀*, 2.
- 지만수(2008), *한·중 FTA,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 19.
- 현오석, 정재화, 이주호(2005), *中·ASEAN FTA 商品讓許 主要 內容*, 무역연구소 FTA연구팀, 2-7.
- 홍정륜(2008), “중국 주도의 동아시아 자유무역협정 연구”, *중국연구*, 제43권, 748-766.
- 棕 寬(2006), *地域貿易協定と多角的貿易自由化の補完可能性：經濟學的考察と今後の課題*, RIETI, 9-11.
- 郭德琳(2007), “以智利為平臺發展與拉美地區經貿關係”, *國際經濟合作*, 第六期, 37-40.
- 唐福泉(2007), “自由貿易協定的發展與中國的區域經濟合作”, *齊魯學刊*, 總第199期, 168-170.
- 刘李峰, 武拉平(2006), “中國FTA實踐中的利益選擇及實現”, *現代經濟探討*, 第6期, 68-71.
- 劉晨陽(2007), “中國參與雙邊FTA進程及其與APEC的政策協調”, *亞太縱橫*, 第2期, 17-20.
- 巫雪芬(2007), “我国区域贸易协定中的原产地规则探析”, *区域經濟*, 34-36.
- 文富德(2007), “論中巴經濟貿易合作的發展前景”, *南亞研究季刊*, 第1期, 4-11.
- 岳雲霞(2006), “中智自由貿易協定評價”, *拉丁美洲研究*, 第1期, 64-68.
- 楊樹明(2007), “中韓自由貿易區構建思路”, *遼寧大學學報*, 第35卷 第4期, 68-73.
- 張曉東(2007), “中國和巴基斯坦開展經濟合作的重點領域”, *南亞研究季刊*, 第1期, 15~19.
- 陳俊(2006), “中國加快發展雙邊FTA探析”, *區域經濟*, 第6期, 16~20.
- 許甯寧(2006), “近十五年來中國與東盟經貿關係評析”, *外交評論*, 總第92期, 19~24.
- 徐小余(2007), “建立中韓自由貿易區(FTA)的探討”, *商場現代化*, 總第501期, 12.
- 胡錦濤(2007), *高舉中國特色社會主義偉大旗幟為奪取全面建設小康社會新勝利而奮鬥*, 中共第17次全國代表大會, 5.